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117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6월 20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 내용 중 “위원회의 설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”이란 규정이 개정조례안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정리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“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삭제함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<p>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(생 략)</p> <p>1. 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5조(포상금 지급 제외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(생 략)</p> <p>1. 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5조(포상금 지급 제외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(생 략)</p> <p>1. 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삭제></p> <p>제5조(포상금 지급 제외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전문위원실안)
	<p>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소 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교통관련 외부전문가</p> <p>2. 법인·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</p> <p>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

현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전문위원실안)
<p>〈신설〉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수당) ① <u>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 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수당)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9조(운영세칙) ① 위원 <u>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	<p>제9조 (운영세칙) 개정안 <u>과 같음)</u>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 <u>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 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</u> 2. <u>심신의 장애로 인하 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</u> 3. <u>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한 경우</u> 4. <u>본인이 해촉을 원하 는 경우</u> 	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(개 <u>정안과 같음)</u></p>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② <삭제>

제6조(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

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교통관련 외부전문가

2. 법인·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

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수당)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3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4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(생 략) 1. ~11. (생 략) ②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 제4조 ~제5조 (생 략)	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(생 략) 1. ~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<삭제></u> 제4조 ~제5조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6조(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.</u> <u>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</u>

현행	개정안
	<p>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2. 법인·개인택시조합 및 버스운송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<p>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수당)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9조(운영세칙)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<p>제6조(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) (생략)</p>	<p>제11조(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신고인의 보호) (생략)</p>	<p>제12조(신고인의 보호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환수) (생략)</p>	<p>제13조(환수) (현행과 같음)</p>